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840
------	------

2025. 6. 2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5월 26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5년 5월 29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 6. 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문화본부장 마채숙)

1. 제안이유

가.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 예술 활동을 진작시켜 서울의 문화 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 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 예술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나. 이에 2025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의 추가 출연에 대해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2)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사무내용

-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
-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 시민의 문화향수 및 창의력 증진
- 지역문화의·육성 지원 및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나. 추경개요

1) 추경예산 : 290,000천원

※ 총 출연금액 53,979,275천원 (기 출연금 53,689,275천원)으로 예산 안 심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2) 출연금 편성 내용

- 순수공연예술 통합브랜드 : 290,000천원

3) 추경필요성

- 신규 개발중인 가을 축제브랜드의 시민인지도 제고 위한 개막행사 개최비용으로,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추가적인 출연금 증액이 필요

다. 서울문화재단 기관 개요

- 1) 소재지 : 서울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용두동 255-67)
- 2) 규모 : 대지 1,520.2㎡, 건물 2,367.41㎡ (6층 건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옥심)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¹⁾에 따른 재단법인 서울문화 재단의 출연 여부에 대한 서울시의회 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나. 출연 규모의 적정성

- 2025년도 서울문화재단의 기정출연금은 536억 8천 9백만원이며, 이번 동의안을 통해 증액하고자 하는 출연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05%인 2억 9천만원임.

< 서울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안(안) 편성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총예산	53,979,275	53,689,275	290,000	0.05%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53,979,275	53,689,275	290,000	0.05%

-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서울문화재단은 올해 새롭게 신설된 ‘서울 어텀페스타’의 개막행사를 개최하여 신규 문화행사의 출범 상징성을 확보하고 시민 및 국내외 관광객에게 인지도와 파급력을 높이하고자 함.
- 서울문화재단은 지난 4월 경영 9기 ‘3대 전략 10대 과제’를 발표 하고 신규 사업들을 편성하였음. 하지만, 기초예술 분야 육성을 위한

1)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전에 세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기보다 시장 역점 및 단기 이벤트성의 사업과 예산을 수립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서울어텀페스타 및 개막행사를 통하여 순수공연예술 창작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 할 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 세부사업별 검토

1) 서울어텀페스타 개막행사

-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글로벌 문화도시 실현을 위한 방안이자 서울 주요 공연예술 축제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서울어텀페스타’의 개막행사를 기획, 운영하기 위한 비용으로 총 2억 9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서울어텀페스타’ 개막행사 예산 세부내역(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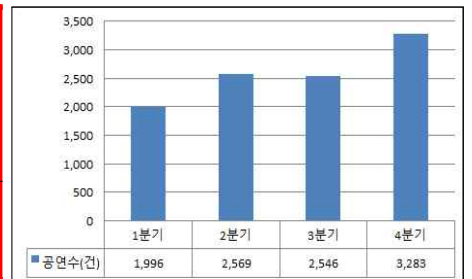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비고
합 계		290,000	
행사 운영비	인건비	46,000	총감독, 기술감독 등
	출연진 사례비	80,000	단체 및 개인
	홍보물 제작비	18,000	인쇄/옥외/영상 홍보물 등
	영상/사진 촬영 및 편집비	12,000	사전/사후 홍보 영상 포함
	운영 대행 용역비	124,000	행사장 구성,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기타운영비	5,000	물품 임차, 행사보험 가입 등
광고선전비		5,000	온/오프라인 광고비

- 서울어텀페스타는 지난 4월 서울시의 역점사업에 발맞춰 가을의 대표 문화축제로써 올해 10월부터 약 2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서울문화재단의 3대 전략 10대 과제 중 하나로써 서울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에게 서울에서 열리는 다양한 공연예술을 알리고자 함.
- 2024년도 국내 공연예매 통계²⁾를 보면 공연예술의 공급과 수요가 4분기에 집중되고 특히, 10월 한 달간 4분기 공연건수의 47%, 티켓예매건수의 37%가 몰려있어, 이 시기에 산재해 있는 공연예술축제를 통합 브랜딩하여 홍보를 지원하는 것은 개별 행사의 부담을 줄이고 관람객을 유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서울어텀페스타' 연계 축제리스트(안)>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공급] 공연건수	1,996	2,569	2,546	3,283
[수요] 티켓예매건수	5,188,987	5,299,085	5,838,133	6,291,809



- 유사한 해외사례로는 매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파리에서 열리는 ‘페스티벌 도톤느(Festival d’Automne à Paris)’로, 프랑스 문화성과 파리지 등 공공의 지원으로 도시 전역에 음악, 무용, 연극, 전시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소개하고 예술가와 대중이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10월 초 예정된 개막행사에서는 서울시예술단, 서울시립교향악단 등 서울시 예술단체 및 민간 공연예술축제와 협력하여 주요 대표작을 선보이고, 순수공연예술에 대한 대중적 친밀감을 높일 수

2) 2024 KOPIS(Korea Performing arts box office Information System, 공연예술통합전산망) 통계리포트 참고

있도록 시민과 관람객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 ‘서울어텀페스타’ 개막행사 프로그램 구성(안) >

구분	추진장소	내용	규모
개막행사	서울광장	• 개막선포 및 기념행사 • 순수공연예술 장르별 대표작 쇼케이스 및 개막 기념 작품 공연	8개 내외
부대 프로그램	서울광장	• 순수공연예술의 대중적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시민 참여/체험 프로그램 기획·운영	4개 내외

- 실제로 서울문화재단이 진행한 자문회의³⁾에서 한국연극협회, 대한무용협회 등 예술단체는 민간의 현실적 어려움이 반영될 수 있는 협력적 추진 체계, 기초예술의 확산과 창작 환경의 개선, 홍보에 대한 지원으로 비용 절감, 공연예술 장르 간 시너지효과, 동반성장의 기대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하지만 같은 시기에 열려왔던 서울문화재단 주최의 거리예술축제를 비롯하여 이전부터 예술인을 중심으로 서울 대표 축제로 성장하고 있던 문화행사들이 오히려 ‘서울어텀페스타’의 새로운 브랜딩으로 본래의 정체성과 영향력을 잃지 않도록 추진 시 주의할 필요⁴⁾가 있다고 판단됨.

3) 민간 공연예술 협단체장 및 주요 축제 관계자를 대상으로 <서울어텀페스타> 추진을 위한 자문회의 4회(5/12(월) 14:00, 5/21(수) 10:00, 14:00(2회), 6/2(월) 16:00) 진행

4) 일례로 ‘서울윈터페스타’의 경우,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2009년부터 시작한 ‘서울빛초롱축제’와 서울 대표 전통 행사인 ‘보신각 타종행사’ 등을 묶으면서 개별 축제·행사의 정체성을 퇴보시켰다는 평가도 존재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질문 : 추가경정예산은 긴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되어야 하는데, 개막행사는 단발성 행사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주요 사업이라면 본예산에 포함해야 했던 것 아닌가.
- 답변 : 늦었지만 기초예술인의 공연과 행사의 절반 가까이가 가을에 몰려있어, 이 시기에 진행되는 공연, 행사를 하나의 축제로 통합 브랜딩하고자 함. 개막행사는 단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실제 참여하는 축제와 공연을 소개 자리를 마련함으로 홍보의 효과를 높이려 하는 것임. 장기적으로 ‘어텀페스타’가 기초 예술인과 협력한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V.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0명, 참석위원 6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 안 변 호	2840
------------	------

제출년월일 : 2025년 5월 26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 예술 활동을 진작시켜 서울의 문화 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 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 예술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나. 이에 2025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의 추가 출연에 대해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2)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사무내용

-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
-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 시민의 문화향수 및 창의력 증진
- 지역문화의 · 육성 지원 및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나. 추경개요

1) 추경예산 : 290,000천원

※ 총 출연금액 53,979,275천원 (기 출연금 53,689,275천원)으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2) 출연금 편성 내용

- 순수공연예술 통합브랜드 : 290,000천원

3) 추경필요성

- 신규 개발중인 가을 축제브랜드의 시민인지도 제고 위한 개막행사 개최비용으로,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추가적인 출연금 증액이 필요

다. 서울문화재단 기관 개요

1) 소 재 지 : 서울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용두동 255-67)

2) 규 모 : 대지 1,520.2 m^2 , 건물 2,367.41 m^2 (6층 건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정유진 (☎ 2133-2555)